

<임원 모집 공고>

공고 제2026-28호

## 과천도시공사 임원(비상임이사·감사) 공개 모집 공고

「지방공기업법」 및 「과천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」에 따라 과천도시공사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6년 2월 26일

과천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

1.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: 비상임이사 4명, 비상임감사 1명
2. 임 기 : 3년
3. 응모 자격 및 수행 요건 : 「지방공기업법」 제60조의 “임직원의 결격사유 등”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각호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
  - 가. 공사업무 관련분야 전문가
  - 나. 세무 및 회계분야 전문가
  - 다. 지방공기업의 기타 경영 및 체육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갖춘 자
  - 라. 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자
4. 지원서 접수
  - 가. 접수기간 : 2026. 2. 26.(목) ~ 2026. 3. 13.(금) 18:00
  - 나. 접수방법: 과천도시공사 채용사이트

- 과천시공사 채용 사이트 (<https://dware.intojob.co.kr/main/gcuc.jsp>)  
「입사지원」-「채용공고」-「과천시공사 임원(비상임이사 감사) 공개 모집 공고」  
'지원서 작성' 클릭하여 작성

## 5. 시험방법 및 일정·장소

가. 시험방법 : 서류심사(1차) 및 면접심사(2차)

※ 서류심사: 2026. 3. 25.(수) 예정 / 면접심사: 2026. 4. 1.(수) 예정

나.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·장소 공지

※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하여 개별 전화통지하며, 임원추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면접심사는 생략될 수 도 있습니다.

다. 최종합격자 발표 : 과천시·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지

## 6. 제출서류

시 기	내 용	비 고
지원시	지원서	채용사이트 내 지원서 양식에 포함
	자기소개서	
	개인정보활용 및 제공동의서	
면접시	임원 결격사유 확인 증명서류 (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)	해당자에 한해 관련 서류 별도 안내
	최종학력증명서, 경력증명서, 관련 자격증	

※ 각종 증명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로 제출

## 7. 보수수준

○ 공사 보수규정 및 관련법령에 의함

## 8. 기타사항

가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. 다만, 불합격자의 경우에는 『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지원서 등 관련 서류를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이내에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
나.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- 다. 과천시공사는 『공직자윤리법』에 의한 ‘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’입니다. 퇴직공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관련 절차를 유념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
- 라.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대상자는 심사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‘취업승인’ 결과를 최종임용이 결정되기 전까지 증빙서류 제출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자세한 사항은 퇴직 기관에 문의)
- 마. 모집결과 응모자의 수가 모집예정인원 수의 2배수에 미달할 경우 재공모 절차를 진행하며, 이 경우 기존 지원자는 지원서 제출 없이 추후에 같이 심사하게 됩니다.
- 바.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또는 임명권자가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재공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- 사.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은 과천시공사 경영지원실 인사부(02-500-1120)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<붙임. 임직원의 결격사유 등>

## 지방공기업법

**제58조(임원의 임면 등)**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(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) 및 감사로 하며,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.

②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(任免)한다. 다만,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(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)를 임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임원추천위원회”라 한다)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3. 21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6. 4., 2023. 3. 21.>

1.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
2.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
3. 제78조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 결과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. <신설 2015. 12. 15.>

1. 제78조의2제3항에 의한 경영 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2.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

⑥ 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 12. 15.>

⑦ 이사(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)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,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

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.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 12. 15.>

⑧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2. 15.>

[전문개정 2011. 8. 4.]

**제60조(임직원의 결격사유 등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,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. <개정 2015. 12. 15., 2025. 1. 7.>

1. 삭제 <2019. 12. 3.>

2. 미성년자

3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4.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5.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6. 삭제 <2015. 12. 15.>

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(제3호는 제외한다)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1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 <개정 2025. 1. 7.>

③ 공사의 직원이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1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 <신설 2025. 1. 7.>

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퇴직한 임직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 <개정 2025. 1. 7.>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 공사에 제공할 수 있다. <신설 2025. 1. 7.>

[전문개정 2011. 8. 4.]

[제목개정 2025. 1. 7.]

## 지방공무원법

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 <개정 2010. 3. 22., 2013. 8. 6., 2015. 12. 29., 2018. 10. 16., 2021. 1. 12., 2022. 12. 27., 2024. 3. 19., 2024. 12. 31.>

1. 피성년후견인
 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
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-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[전문개정 2008. 12. 31.]

[2024. 12. 31. 법률 제20621호에 의하여 2023. 6. 29.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6호의4를 개정함.]

## 과천도시공사 정관

제18조(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) ① 임원의 결격사유는 법 제60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른다.

② 직원의 결격사유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결격사유에 따른다.

③ 공사의 임직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퇴직된 임·직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